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라목바)를 사)로 하고, 같은 목에 15)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 제2조 각호의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	--	--	--	--

별표 1 제2호라목에 15)바)(1)부터 15)바)(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동판매차량으로 실 소비자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등 제2조의2에 따른 이동판매방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

법을 위반한 경우

(2) 제2조의2에 따른 이동판매방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자기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차량으로만 석유를 공급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3) 자기의 석유를 타인의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 석유를 보관한 자가 자기를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도록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타인의 석유를 자기의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그 석유의 보관을 요구한 자를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자기를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그 석유를 공급한 자에게 석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6) 타인을 대신하여 석유를 공급하고 그 석유의 공급을 요구한 자로부터 석유대금을 받은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7) 공급받는 석유를 자기의 점포로 배송 받지 아니하고 착지를 변경하여 타인에게 직배송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8) (7)의 영업방법으로 직배송한 석유를 공급 받은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9) 주유소의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공급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0) 석유판매업별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거나 석유를 공급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석유를 공급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1) 그 밖에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5)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4항 제8호					15)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4항 제8호				
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현)	행	과	갈	음)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현)	행	과	갈	음)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	등록취소					(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	(현)	행	과	갈	음)

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경우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	또는 영업장 폐쇄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경우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1)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	(현)	행	과	갈	음)
							(현)	행	과	갈	음)

·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 ·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	(현)	행	과	갈	음)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 ·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 ·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현)	행	과	갈	음)	
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바) 법 제39조 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 제2조 각 호의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1) 이동판매	사업	사업	등록		

차량으로 실 소비자 차량 에 직접 주 유하는 방법 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등 제2조의2에 따른 이동판 매방법을 위 반한 경우	정지 1개 월	정지 3개 월	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
(2) 제2조의2 에 따른 이 동 판 매 방 법 을 위반하지 않 았 으 나, 자기 점포에 서 직접 판 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차 량으로만 석 유를 공급한 경우	사업 정지 1개 월	사업 정지 3개 월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
(3) 자기의 석 유를 타인의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 석 유를 보관한 자가 자기를 대신하여 석 유를 공급하 도록 한 경 우	사업 정지 1개 월	사업 정지 3개 월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
(4) 타인의 석 유를 자기의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그 석유의 보관 을 요구한 자를 대신하 여 석유를 공급한 경우	경고	사업 정지 3개 월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
(5) 자기를 대 신하여 석유 를 공급하도 록 하고 그 석유를 공급 한 자에게 석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 정지 1개 월	사업 정지 3개 월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
(6) 타인을 대	경고	사업	등록

신하여 석유 를 공급하고 그 석유의 공급을 요구 한 자로부터 석유대금을 받은 경우		정지 3개 월	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
(7) 공급받는 석유를 자기 의 점포로 배송 받지 아니하고 착 지를 변경하 여 타인에게 직배송한 경 우	사업 정지 1개 월	사업 정지 3개 월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
(8) (7)의 영업 방법으로 직 배송한 석유 를 공급받은 경우	경고	사업 정지 3개 월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
(9) 주유소의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차 량에 주유하 는 방법으로 석유를 공급 한 경우	사업 정지 1개 월	사업 정지 3개 월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
(10) 석유판매 업별로 석유 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 대방으로부 터 석유를 공급 받거나 석유를 공급 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석유를 공급 한 경우	사업 정지 1개 월	사업 정지 3개 월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
(11) 그 밖에 영업범위 또 는 영업방법 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 하거나 공급 받는 경우	사업 정지 1개 월	사업 정지 3개 월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
사) 그 밖의 경 우	사업 정지	사업 정지	등록 취소

			1개 월	3개 월	또는 영업 장 폐쇄	
--	--	--	---------	---------	---------------------	--